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 (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에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 징수규칙중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산업자원부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공고 제2000-172호 11월 18일 산업자원부 장관 공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의욕 고취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실시중인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를 공공연구기관에까지 확대하고, 그 감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출원율이 낮은 실용신안·의장·상표의 전자출원료를 인하함으로써 정보화사회 구축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및 소기업 등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법률구조를 실시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1) 전자문서로 출원할 경우 실용신안 1만6천원, 의장 6만원(무심사 등록 4만7천원), 상표 5만7천원(준속기간갱신등록 8만9천원)으로 출원료를 인하함
- (2) 심판의 종류를 출원 또는 등록권리 전체를 다루는 거절사정불복심판·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 심판과 그 이외의 심판으로 구분하여 거절사정불복심판등의 심판청구료는 출원 또는 등록

권리의 전체 청구항, 의장 또는 상품류 구분에 대해 부과하고, 그 이외의 심판청구료는 심판 청구의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청구항, 의장 또는 상품류 구분에 대하여 부과함

- (3)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재학생 등 수수료 면제대상자에게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자·개인 또는 소기업이 자신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심판청구료의 70퍼센트를 감면함
- (4)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시 특허청에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심사청구료의 30퍼센트,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모두를 첨부할 경우 7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특허청이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합의한 외국특허청에서 조약에 의거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심사청구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함
- (5) 국제출원 수수료중 특허협력조약규칙에 의한 지정국의 지정료 면제기준인 초과 지정국수를 10개국에서 6개국으로 축소함
- (6) 출원료등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개인 또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70퍼센트, 중소기업·정부출연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각각 5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50퍼센트를 동기간까지 감면함

3. 의견제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전화 : 481-5042 기획예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